

JBIC의 해외투자금융 제도 개요 조사

(2013. 10.)

동경사무소

- (취급근거) JBIC의 해외투자 관련 업무는 '11. 5. 2자로 공포 및 시행된 「주식회사 국제협력은행법」 (“신JBIC법”으로 통칭)에 JBIC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음

독립 JBIC법(‘11. 5. 2) 중 해외투자업무 관련 조항

(업무의 범위)

제11조 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3 일본 법인 등, 외국 정부 등 또는 출자 외국법인 등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대출, 해당 자금과 관련되는 대출채권 양도, 해당 자금과 관련되는 채무의 보증 등 실시, 일본 법인 등 또는 출자 외국법인 등이나 외국 금융기관 등 혹은 외국 정부 등이 외국의 법인 등에 대해서 해당 자금과 관련되는 채무의 보증 등을 실시했을 경우에 대해 그 채무의 보증 등과 관련되는 채무의 보증 등 실시, 또는 해당 자금의 조달을 위해서 발행되는 공사채 등을 응모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취득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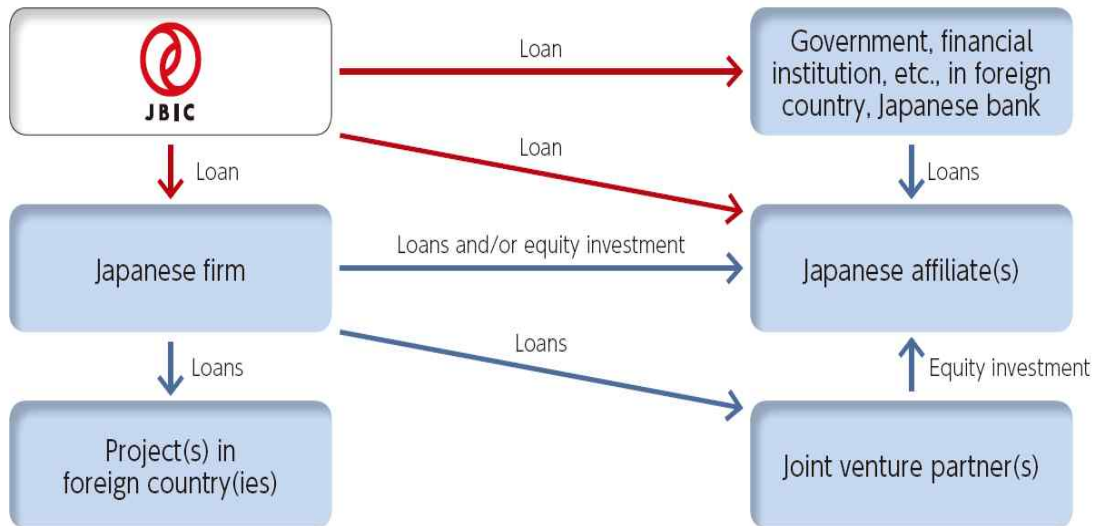
- (세부사항) JBIC의 해외투자 관련 업무의 세부 업무방법은 JBIC 업무방법서 제3장(투자금융)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음
 - (대출용도) 해외투자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되는 자금
 - (차주) 해외투자사업 영위 일본기업/외국정부/출자 외국기업 등
 - (대출금액) 해외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 범위 내
 - (대출방법) 원칙적으로 증서대출
 - (대출이율 및 기한) 은행 등의 통상 거래조건,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

- (상환방법)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만기상환
- (담보조건) 신용도를 감안하되 신용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물적담보나 보증 청구
- (협조용자) 원칙적으로 타 기관과 협조용자 실시, 단 협조용자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 등에는 JBIC 단독지원 가능

* 해외투자금융의 경우 JBIC 협조용자 대출 비율한도는 70%임

- (지원구조) JBIC의 대출 및 출자를 통해 해외투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출자의 경우 일본기업의 해외관계회사로만 대상이 제한되어 있음

<JBIC의 해외투자자금 지원구조>



□ (지원실적) 신 JBIC 출범 이후 적극적인 해외투자 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따라 '12 회계연도 중 지원실적이 전년대비 급증

* 주요 인프라 산업에 대한 선진국 앞 지원 재개 등

<JBIC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엔)

구 분	2012('12.4~'13.3)	2011('11.4~'12.3)	증감
대출·출자	3,937,706	1,367,342	188.0%
수출금융	126,674	207,943	△39.1%
수입금융	304,338	172,600	76.3%
투자금융	3,138,582	962,011	226.3%
사업개발등금융	293,760	23,241	1,164.0%
출 자	74,350	1,547	4,705.5%
보 증	303,279	228,596	32.7%
합 계	4,240,984	1,595,941	165.7%

주) 합계 수치는 4사5입 관계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자료 1> JBIC 업무방법서 中 투자금융 부문 발취

제4장 투자 금융

제24조 투자금융 중 자금의 대부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출금의 용도

해외투자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총당되는 자금. 단 단기 자금과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 법인 등 또는 출자 외국법인 등이 행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해외투자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총당되는 자금(단기 자금을 제외)을 대부하는 것을 국제협력은행이 기약하고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을 대부에 한하여 행한다.

2 대부의 상대방

가. 해외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법인 등 외국 정부 등이나 출자 외국법인 등이나 해외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자로 한다.

나. 우리나라 법인 등이 해외 투자 사업을 할 경우, 본호(2)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우리나라 법인 등으로 한다.

다. 우리나라 법인 등에 대한 대부(우리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의 해외에서의 개발 및 취득 촉진을 위해서 행하는 것 제외) 중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이하"중소기업자 등"이라 한다.) 이외의 것에 대한 것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1) 우리나라 법인 등이 출자 등에 의한 해외의 사업 개시, 확대 또는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에서 언급하는 외국 법인의 경영을 지배할 목적으로 또는 해당 법인에 관한 사업상의 제휴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① 사회 자본 정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외국 법인

② 일정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 때문에 통상 이용되는 기술보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 법인

③ 일정 지역에서 널리 판매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상품 또는 역무에 관한 축적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출자 등을 실시하는 법인 등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외국 법인

(2) 은행 등이 다음에 제시하는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해당 은행 등에 대해 해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자 등의 출자에 관련된 출자 외국 법인 등에 대한 본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금의 대부

② 우리나라 법인 등에 대한 본호(1)에 규정하는 자금의 대부

(3) 국제 금융 질서의 혼란으로 우리나라 법인 등의 해외에서의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은행의 업무의 특례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재무장관이 정한 경우

3 대출금의 금액

해외 투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자금 가운데 따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4 대부의 방법

원칙으로서 증서 대출로 하되, 미리 계약에 따라 대출액의 한도를 두고 할 수 있다.

5 이율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의 해외 개발 및 취득 촉진 혹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및 향상 또는 국제 금융 질서의 혼란 방지 또는 그 피해에의 대처를 위한 중요도, 상환기한, 은행 등의 거래의 정상적인 조건 또는 금융 시장의 동향 기타의 사유를 감안하여 정한다.

6 상환 기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의 해외 개발 및 취득 촉진 혹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 및 향상 또는 국제 금융 질서의 혼란

방지 또는 그 피해에의 대처를 위한 중요도, 상환기한, 은행 등의 거래의 정상적인 조건 또는 금융 시장의 동향 기타의 사유를 감안하여 정한다.

7 상환의 방법

원칙적으로 분할 변제 또는 정기 상환한다.

8 담보 및 보증

대부의 상대방의 신용력을 감안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검토하고, 대부의 상대방의 신용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적 담보나 보증을 청구한다.

9 협조 용자

우리나라 법인 등에 대한 자금 대부의 경우에는 협조 용자로 한다. 단, 타 은행 등이 국제협력은행과 함께 자금을 대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며, 국제협력은행이 대부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본조 제2호((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